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7
----------	------

발의연월일 : 2024. 2. 2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등 12인

1.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명확화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위탁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나.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시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의3제1항)
-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라.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 및 동의안 서류 신설(안 제9조)
- 마.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료 후 새로운” 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 로 한다.

제3조 중 “없는 한 이 조례가” 를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의회동의 및 보고)” 를 “(의회동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위탁을 포함한다)” 를 “(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안 및 보고안” 을 “동의안”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 을 “다음 각 호의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를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 구성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생략)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계약) ① -----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 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